

의안번호	2213554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6.1. 5.
추 계 번호	25B55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예술인 구직급여의 지급 요건 중 기준기간 및 피보험 단위기간이 변경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2억원, 2031년 73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40억원(연평균 68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안 제77조의3)	62	65	68	71	73	340	68

주: 1. 본 추계서는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개별 수급자의 요건 및 경기변동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함(제1항) 1. 이직일 이전 <u>18개월</u>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u>180일</u> 이상일 것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7조의3(예술인 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 직급여)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법에 따라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²⁾, 개정안은 예술인 구직급여의 지급 요건 중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예술인 구직급여의 지급 요건 중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5.11.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3	3.2	3.3	3.3	3.3	3.3	3.3

2) 기준기간 및 피보험 단위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됨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행: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 개정안: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예술인 구직급여의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변경에 따른 재정소요액으로 사업대상자 수에 1인당 지급단가 및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추계기간 동안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기준선)는 2024년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 현황과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경기전망(2026~2029년)에 따른 실업자 수를 토대로 산출
 - 동 기간 이후(2030~2031년)의 실업률은 2029년 기준 실업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2024년 기준 국내 실업자 수 대비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0.7%)이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2] 실업자 수 및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업자 수(만명)	110.8	103.7	83.3	78.7	82.3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명)	-	211	2,275	5,060	5,872

주: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구직급여(연장포함)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2024년 예술인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을 토대로 산출
 - 2024년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상실자(37,701명) 중 이직일 기준 24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9개월 이상인 예술인(20,254명) 대비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예술인(23,873명)의 비율(1.18배)을 적용하여 산출
 - 2024년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상실자와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상실자의 행태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3] 예술인 고용보험 상실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고용보험 상실자 수	833	38,072	39,605	40,993	37,701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 피보험기간이 9개월 이상	100	9,634	19,854	21,399	20,254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110	15,754	25,051	25,536	23,873

주: 1. 상실자 수는 해당연도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인원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치(단기 예술인 제외)
2. 고용보험 가입 상실자의 평균 피보험기간(일)은 해당연도 예술인 피보험자격에 대한 이직일 기준으로 24개월 내(18개월 내) 피보험기간의 평균이며, 24개월 내(18개월 내) 구직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 만료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임

자료: 고용노동부

[표 4]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기준선(A)	6,356	6,466	6,551	6,551	6,551
개정안(B=A×1.18)	7,491	7,622	7,722	7,722	7,722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수급자 수(C=B-A)	1,136	1,155	1,171	1,171	1,171

주: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구직급여(연장포함)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지급단가) 2024년 기준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50,377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5] 예술인 구직급여일액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술인	—	46,711	49,588	49,584	50,377

주: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구직급여(연장포함)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표 6] 예술인 구직급여일액(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예술인	55,430	57,242	59,108	61,034	63,024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정급여일수) 2026년 고용노동부 기금운용계획 기준 소정급여일수(99일)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소정급여일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예술인의 구직급여에 대한 기준기간 및 피보험 단위기간이 변경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2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7] 예술인 구직급여의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사업대상자 수(A, 명)	1,136	1,155	1,171	1,171	1,171
1인당 지급단가(B, 원)	55,430	57,242	59,108	61,034	63,024
1인당 지급기간(C, 일)	99	99	99	99	99
소계(D=A×B×C, 억원)	62	65	68	71	73

주: 1. 본 추계서는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개별 수급자의 요건 및 경기변동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개별 수급자의 요건 및 경기변동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